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례안

의안 번호	1134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하고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있음(별첨)

- 입법예고 : 2003. 4. 1 ~ 4. 21(20일간)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여성과
입 안 자	실.과장	사회여성과장
	직위 .성명	최 병 덕
	담당. 팀장	가정복지팀장
	직위. 성명	고병화
담당자		고병화
성명. 전화		(행정226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②~⑤ (생략)</p>	<p>제11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 시립분과

우425-172 경기도 안산시 사동 1475-3번지 / 전화 (031)416-9979 / 전송(031)416-9977

시립분과장: 서혜성

총무: 하은경

문서번호 시립분과 2003-03
 시행일자 2003년 4월 21일
 경 유
 받 음 안산시장
 참 조 사회여성과

선 결	국장	<i>07/20/19</i>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i>2003. 4. 21</i>		결 재 · 공 람	과장	
		번호	<i>1182</i>		당당	<i>2003/4/21</i>	
		처리과	사회여성과				
		담당자	<i>서혜성</i>				

제 목 안산시 보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3년 4월 4일 보육조례 입법 예고안을 보고 안산시 보육시설 연합회 시립분과 시설장들이 의견을 덧붙임과 함께 제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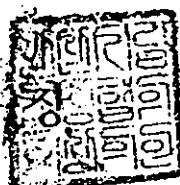
덧붙임: 1. 안산 인근시 서울 부산시 보육시설 자치조례 비교

2. 위탁체 교체에 따른 예상

3.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안산시 보육시설 연합회 시립분과의 견해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 시립분과

수신처 안산시장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안산시 보육시설 연합회 시립분과의 견해

1. 보육 조례개정의 정신이 명확하여 안산시 보육의 상을 적립하고 그 취지에 맞는 목표 설정 후 개정 작업을 해야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육조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모든 일들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안산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좋은 제도(시립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결과를 시 자체가 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초래되어 시 행정의 불신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3. 보육은 운영체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 수혜자(학부모, 아동), 교사등의 협력의 집합체라는 인식을 갖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보육정보센타등의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높고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집행부에서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부 자체가 시립의 불신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위탁운영자들에게 기회를 폭넓게 하자 한다는 내용은 공감하나 시립본 오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실제 그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운영자들의 접수 상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들에게 위탁 횟수는 1회에 한다는 제한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기회 확대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기 운영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등 대 도시의 조례참조)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64
----------	------

제안년월일 : 2003. 9. 24.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일부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제2조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을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 구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1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1조(위탁기간) ①.....</p> <p>.....</p> <p>재계약 <단서 삭제></p> <p>②~⑤(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위탁 할 수 있다.</p> <p>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 구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1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⑤(생략)</p>	<p>제11조(위탁기간) ①.....</p> <p>.....</p> <p>재계약.....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⑤(원안과 같음)</p>
<p>〈신 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p> <p>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 후 재위탁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위탁 할 수 있다.</p> <p>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